

제 호				
([]회수, []소독, []폐기, []반송, []반출, []기타) 명령서				
소유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대리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품 목 명		수 량		비 고
격리재배지				
실시 장소				
실시 기간				
실시 방법				
실시 사유				
「식물방역법」 제13조제1항, 제16조제2항제1호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([]회수·[]소독·[]폐기·[]반송·[]반출·[]그 밖에 필요한 조치)할 것을 명합니다.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○○지역본부·사무소 식물검역관 (서명 또는 인)				

유 의 사 항

1. 소독·폐기·반송 또는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독·폐기·반송 또는 반출 시까지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
2. 소독·폐기·반송 또는 반출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할 것
3. 폐기대상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"폐기대상품"임을 표기할 것
4. 소독 또는 폐기는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할 것